

## 공정거래와 자율준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김종선

얼마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1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평가 대상 59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를 차지하였다. 2008년 31위에서 연속 3년 상승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과학 인프라(5위), 고용(6위), 재정정책(11위) 부문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보였지만,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55위), 주주 권리(54위), 노사관계 생산성(53위), 산업협력(52위) 등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산업화 초기단계였던 1960~70년대에 가장 취약했던 과학 인프라, 국가재정, 고용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그간 정부가 온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어왔던 기업효율성 부분은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기업의 효율성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 하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과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달성된다. 이는 가장 중요한 국가성장동력이다.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이야 말로 기업과 소비자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근간이 된다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이다.

기업활동이 공정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업활동으로 기업간 인수합병(M&A), 하도급, 구매 및 판매, 신(新)사업 진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활동 모두가 공정거래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년간 법집행을 통해 3조8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나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기업 스스로가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CP는 중요”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자는 자율적인 준법시스템으로 기업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기업 스스로가 CP를 운영하여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기업 이미지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독점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카르텔 등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가 범죄행위로 취급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CP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독점금지법 자율준수를 위한 기업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6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지원 하에 임직원에 대해 CP 준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전사적(全社的) 인 대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합회는 지난 2001년 자율준수위원회의 CP지원사무국으로 지정되어 업계에 대한 CP 보급 및 확산 역할을 공식적으로 부여 받았으며, 현재 약 400여 개의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통해 협력업체의 CP 도입을 선포하였으며 운영·지원을 하는 대기업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의 CP 도입 유도를 위해 CP 도입기업들의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이 적발될 경우에 과징금 감경이나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주된 목적이 이익 추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익 추구의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이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기업만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반칙’으로는 한계가 있다.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야말로 기업의 신뢰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경제 환경이다. ■